제304회 임시회
2011. 10. 27(목)

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 청 북 도 의 회
정 책 복 지 위 원 회

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1. 10. 27(목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1년 10월 10일

○ 회부일자 : 2011년 10월 13일

다. 상정일자 : 2011년 10월 24일

○ 제3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수정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고규창 정책관리실장)

가. 제안이유

○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관리범위 확대 및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정책연구용역 심의·관리 적용범위 확대 (안 제3조)
- 건당 5천만원이상 → 금액불문 모든 정책연구용역으로 확대

○ 위원회 운영 중 회의소집 통지 기간 단축 (안 제7조)
- 회의소집 통지일 15일전 → 7일전으로 단축

○ 용역실명제 명문화 (안 제9조)
- 용역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용역실명제 운영

○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(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)
- 용역담당관 → 용역 실명 대상공무원으로 개정

3. 검토보고 요지

(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: 홍 범 희)

가. 조례 개정의 동기 및 필요성

○ 동 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 심의 및 관리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용역의 전 과정에 대해 관계공무원에게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내실 있는 연구용역 수행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나. 세부 내용별 검토 의견

○ 심의·관리대상 용역이 금액에 관계 없이 모든 정책연구용역으로 확대되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반해, 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심의·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바,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지 검토가 필요함 (안 제3조)

○ 용역 실명 대상공무원을 용역관련 실·국장, 과장·담당관, 팀장, 담당주무관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본청의 직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에서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용역 실명 대상공무원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함 (안 제9조)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"생략"

5. 토론요지 : "생략"

6. 심사결과 : 수정의결

7. 수정안 요지

○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1. 10. 24, 장선배 의원

○ 수정이유

- 직속기관·사업소에서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용역 실명 대상 공무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.

○ 주요 수정내용

- "제9조제1항의 용역 실명 대상공무원은 용역관련 실·국장, 과장·담당관, 팀장, 담당주무관으로 한다"에 다음 내용을 추가함
  단, 직속기관·사업소의 경우 위와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.

8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충청북도조례 제　　호

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9조(용역실명제)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“② 제1항의 용역 실명 대상공무원은 용역관련 실·국장, 과장·담당관, 팀장, 담당주무관으로 한다. 단, 직속기관·사업소의 경우 위와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.“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**건당 5천만원 이상의**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용한다. 다만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	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**모든**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용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	(개정안과 같음)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
<신 설>	**2.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**	
2. **천재지변 복구**, 법정전염병 방 제 등 긴급한 도정현안을 해결 하기 위한 용역**(POOL 용역비)**	**3. 그 밖에** 천재지변 복구, 법정 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도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	
제7조(위원회의 운영) ①~③ (생 략)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**15일** 전에 회의 일시,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7조(위원회의 운영) ①~③ (현행과 같음)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**7일** 전에 회의 일시,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(개정안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9조**(용역담당관)** ① 도지사는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별로 용역담당관을 두며, 용역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. **<신 설>**	제9조**(용역실명제)**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. **② 제1항의 용역 실명 대상 공무원은 용역관련 실·국장, 과장·담당관, 팀장,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.**	(개정안과 같음) **② 제1항의 용역 실명 대상 공무원은 용역관련 실·국장, 과장·담당관, 팀장,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. 단, 직속기관·사업소의 경우 위와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.**
②**용역담당관**은 ----------.	③**용역 실명 대상공무원**은 ----------.	(개정안과 같음)
1.~ 4. (생 략)	1.~ 4. (현행과 같음)	
제10조(정책연구용역 제안서의 제출) ① (생 략) ② **용역담당관**은 ----------.	제10조(정책연구용역 제안서의 제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**용역 실명 대상공무원**은----------.	(개정안과 같음)
제12조(연구진행상황의 점검) ① **용역담당관**은----------. ② **용역담당관**은----------.	제12조(연구진행상황의 점검) ① **용역실명대상공무원**은----. ② **용역 실명 대상공무원**은----------.	(개정안과 같음)
제13조(연구결과의 평가) ① (생 략) ②**용역담당관**은----------.	제13조(연구결과의 평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**용역 실명 대상공무원**은----------.	(개정안과 같음)
제14조(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활용의 공개) **용역담당관**은----------.	제14조(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활용의 공개) **용역 실명 대상공무원**은----------.	(개정안과 같음)

충청북도조례 제　　호

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목외의 본문 중 “건당 5천만원 이상의”를 “모든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여 “천재지변”앞에 “그 밖에”를 삽입하고, 후단(POOL 용역비)를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

제7조제4항 중 “15일”을 “7일”로 한다

제9조의 제목 “용역담당관”을 “용역실명제”로 하고,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.

제9조의 “제2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하고, 본문 중 “용역담당관”을 “용역 실명대상공무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관련 실·국장, 과장·담당관, 팀장, 담당주무관으로 한다. 단, 직속기관·사업소의 경우 위와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, 제12조제1항,제2항, 제13조제2항, 제14조 제목외의 본문 중 “용역담당관”을 “용역 실명 대상공무원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